

의안번호	2216306
의 퇴 인	문정복 의원
회 답 일	2026.03.30.
추계번호	26C0486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 개정안에 따라 표준유아교육비 산정을 위한 조사를 3년 주기로 실시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향후 5년간 총 3,000만원(연평균 600만원)으로 추계

[표 1]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 계	연평균
표준유아교육비 조사 (안 제24조)	-	-	30	-	-	30	6

주: 본 추계는 기존에 비정기적으로 실시된 표준유아교육비의 향후 비용을 기준선에 반영하지 않아 개정안 시행에 따른 실제 추가재정소요는 본 추계결과를 하회할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24조 (무상교육)	(제4항) 교육부장관은 표준유아교육비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제5조제1항에 따른 중앙유아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표준유아교육비를 정한다.	의무규정

III.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 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	안 제24조 (무상교육)	○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본 추계서에서는 표준유아교육비 산정을 위한 조사(이하 “조사”)를 3년 주기로 실시하는 경우 소요되는 비용을 추계

- 현행 「유아교육법」은 유아교육비 지원을 위한 표준유아교육비 산정 절차 및 방법을 규정하고 있으나, 조사 주기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¹⁾
 - 이에 따라 표준유아교육비 산출을 위한 조사는 2016년, 2017년, 2020년 등 비정기적으로 실시되고 있음
 - 한편, 「영유아보육법」은 교육부장관이 3년 주기로 표준보육비용 결정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매년 공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²⁾³⁾

[표 2] 최근 3회분 표준유아교육비 조사 현황

조사 연도	2016년	2017년	2020년
수행기관	육아정책연구소	육아정책연구소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조사 표본 수(개소)	609	545	545

주: 1. 2017년의 경우 표준보육비용 산출 연구와 동시에 수행됨

2. 2025년 표준유아교육비 산정에 관한 조사가 발주되어 현재 진행 중임

자료: 교육부

- 개정안에 따른 조사 비용은 2020년 및 2025년 표준유아교육비 조사 연구 용역비를 준용하여 산출
- 2025년 표준유아교육비 산정에 관한 조사가 현재 진행 중임을 고려하여 추가재정소요는 다음 주기인 2028년부터 발생한다고 가정

□ 안 부칙에 따른 시행일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이므로 추계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으로 함

1) 「유아교육법」

제24조(무상교육) ④ 교육부장관은 제5조제1항에 따른 중앙유아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표준유아교육비를 정한다.

2) 「영유아보육법」

제34조(무상보육) ⑦ 교육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표준보육비용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물가상승률, 최저임금 상승률 등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을 반영하여 제6조에 따른 중앙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표준보육비용을 결정하여야 한다.

3) 동 조항 신설(2020.1.16.)에 따라 육아정책연구소는 2022년과 2025년에 표준보육비용 산정을 위한 연구를 수행함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 추계의 전제에서 가정한 바에 따라 2020년 및 2025년 유아교육비 조사 연구용역비를 준용하여 산출하며, 추가재정소요는 향후 5년간 총 3,000만원으로 추계

- 2020년과 2025년 조사에 배정된 연구용역비가 각각 3,000만원으로 동일한 점을 고려하여 추계기간 동안 해당 금액이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

* [참고자료] 2020년 표준유아교육비 조사 집행 내역

[표 2] 유아 사교육비 실태조사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단위: 백만원)

구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 계	연평균
표준유아교육비 조사	-	-	30	-	-	30	6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V. 부대의견

- 본 추계는 기존에 비정기적으로 실시된 표준유아교육비의 향후 비용을 기준선에 반영하지 않아 개정안 시행에 따른 실제 추가재정소요는 본 추계결과를 하회할 수 있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사회비용추계과	정현수	이진우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정현수	02-6788-4627	jhs@assembly.go.kr

[참고자료] 2020년 표준유아교육비 조사 집행 내역

(단위: 천원)

구분		계약액	집행액
인건비		14,568	14,568
연구활동경비	여비	1,440	1,410
	자료구입비	2,059	1,996
	인쇄비	982	323
	회의비	6,280	6,280
	교통비	400	130
일반관리비		1,544	1,482
부가가치세		2,727	2,618
합계		30,000	28,809

주: 단수조정에 따라 합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자료: 교육부